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10 선고 2020가단293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1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,604,163원과 그 중 4,4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5. 18.부터, 37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8. 2.부터 각 2020. 2. 20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"청구원인"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고홍석

별지